

## 1. 개정이유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 2. 주요내용

### 가.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 1) 법률에서 위임받은 '항공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개정, 별표 1의3 신설)하고, 항공방제업 (변경)신고서 및 신고증 등을 마련함(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 2)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항공방제업 관련 사항을 반영함(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3) 항공방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방제업자의 기록·보존 및 제공 대상 정보를 추가함(별표 2, 별표 3의8, 별표3의9 개정).

### 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안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9까지 신설)

- 1) 법률에서 위임받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2)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인 분쟁조정 신청서, 통지서, 조사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조정안, 조정안 통지서, 조정조서를 마련함(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 다. 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목록’을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정도를 고려하여 구체화함(안 24조의2 개정, 별표 3의7 신설).
- 2)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1 개정).

#### 라. 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 1) 법률에서 위임받은 ‘수출전용농약 등록 시 제출면제 서류의 범위’를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등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2) 법률에서 국내 제조농약 등록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전용농약도 관련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마.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 1) 농관원이 유통 농약등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개정).
- 2) 농관원 직권으로 농약등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면, 농진청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불합격 농약등을 수거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를 농관원에 통보하도록 검사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5 개정).

바. 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안 제17조 개정)

업계에서는 주로 농약 원제 외의 부자재를 변경하여 약효 증대 및 약해 지속기간 감축 등을 달성하는데, 농약별로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하여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하여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 1) 제조업자등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차수 적용규정을 마련하고,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개정).
- 2)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차수를 구체화함(안 별표 3의4 개정).

아. 수수료(안 별표 7 개정)

- 1)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 세부기준을 마련함.
- 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 세부기준을 마련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류”를 “서류(제6조의3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및 수입업 중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및 수입업 중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서류”를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신고서(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를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류

제5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검역본부장은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때에는 별표 1의2”를 “경우 검역본부장은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농관원장은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중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

제5조의2의 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5호) 중 “약제창고”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약제창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검역본부장은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때에는 별표 1의2”를 “경우 검역본부장은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농관원장은 별표 1의3”으로,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통사항

가. 법인명(상호명)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대표자의 성명

3. 항공방제업의 경우: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변동사항(구입, 판매 및 폐기 등)

③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항공방제업 신고증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

제6조의2의 제목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으로,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별표 1의2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표 1의3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제조업 등의 신청서류의 확인)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에 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항공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관원장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을 “검역본부장, 농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그 영업을 폐업하려면”을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항공방제업자는 농관원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증”을 “신고증(다만,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을 “검역본부장, 농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수출농약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농약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농약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과 제조처방이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약효·약해·독성·잔류성 시험성적서 및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2. 제1호 외의 경우: 약효·약해·잔류성시험성적서(다만, 약효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다)

제17조제3항제2호나목 중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작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세부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세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 및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법 제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은 별표 3의7과 같다.

제24조의3제1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이”로, “별표 3의7”을 “별표 3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자가”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로, “별표 3의8과”를 “별표 3의9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을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을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으로, “기록하거나”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판매·구매 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검역본부장”을 “검역본부장 또는 농관원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2호 중 “법 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단,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2.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이하 “농약피해”라고 한다) 발생의 일시·장소

3. 농약피해 분쟁의 내용

4. 농약피해 분쟁의 경과

5. 농약피해 분쟁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접수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

2.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4. 당사자의 적격성

5. 대리인 선임 및 그 대리인의 적격성

6. 그 외 필요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24조의6제1항부터 제24조의8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⑤ 조정위원회는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의 사유로 양쪽 당사

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 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의6(분쟁조정절차)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명단의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분석·검사·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관,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7(조정절차의 분리·병합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한 경우 또는 조정전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취하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절차를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제24조의8(조정의 성립 등) ① 제24조의6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내용을 양쪽 당사자 모두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2항 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 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 농관원장”으로, “따른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 농관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가공”을 “재가공·재포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24조제6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 중 1)과 동일함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제 취급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둘 것(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를 취급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화학·화공학 등 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을 포함한다),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를 포함한다)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3) 생산 시설 및 장비

#### 가) 일반기준

원료계량장치, 화학반응 또는 발효장치, 건조시설, 포장시설 등 해당 원제를 생산, 포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여 갖추 것. 다만, 원제별 공용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나) 다음의 장비를 추가로 갖추 것(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를 취급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1) 농약등의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배관을 갖추 것.

(가)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질 것.

(나)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할 것.

(다)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물질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할 것.

(라) 배관의 밸브 또는 콕에는 개폐 방향을 표시할 것.

(마)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할 것.

(2)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 할 것.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점화에 의하여 연소,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선 및 전기기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있을 것.

(5)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6)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가. 인력

1)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2) 원제업의 인력기준 중 2)와 동일함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I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2 II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적용대상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br>위반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2항제1호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3항제1호<br>의2               | 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1의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 법 제7조 제1항<br>제1호의2, 제2항<br>제1호의2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 2. 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 법 제7조 제1항제2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등록취소  |            |             |

|                                                                                                                                                                                                                                                                                                                                  |                 |              |                                     |                             |      |
|----------------------------------------------------------------------------------------------------------------------------------------------------------------------------------------------------------------------------------------------------------------------------------------------------------------------------------|-----------------|--------------|-------------------------------------|-----------------------------|------|
|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br>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br>제를 제조·수입하거나<br>판매한 경우                                                                                                                                                                                                                                                                             |                 |              |                                     |                             |      |
| 3. 법 제14조제2항(법 제<br>8조의2제1항 후단 또<br>는 법 제17조제3항에<br>따라 준용되는 경우를<br>포함한다)에 따른 등록<br>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br>의 취소처분이나 제조<br>·수출입 또는 공급을<br>제한하는 처분(회수·<br>폐기명령을 포함한다)<br>을 위반하여<br>가. 등록사항의 변경처<br>분을 받은 품목을 변<br>경하지 아니하고 제<br>조·수입한 경우<br>나. 등록취소처분을 받<br>은 품목을 제조·수<br>입한 경우<br>다. 제조·수출입 또는<br>공급을 제한하는 처<br>분을 받은 품목을 제<br>조·수출입 또는 공 | 법 제7조<br>제1항제3호 |              |                                     |                             |      |
|                                                                                                                                                                                                                                                                                                                                  |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해당 품목<br>제조·수<br>입정지 3<br>월<br>등록취소 | 해당 품목<br>제조·수<br>입정지 6<br>월 | 등록취소 |
|                                                                                                                                                                                                                                                                                                                                  |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해당 품목<br>제조·수<br>입정지 6<br>월         | 해당 품목<br>제조·수<br>입정지 1<br>년 | 등록취소 |

|                                          |                      |                      |                                         |                                |         |
|------------------------------------------|----------------------|----------------------|-----------------------------------------|--------------------------------|---------|
| 급한 경우                                    |                      |                      |                                         |                                |         |
|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    | 법 제7조 제1항제4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해당 품목<br>· 원제 제조 · 수입<br>정지 6월          | 해당 품목<br>· 원제 제조 · 수입<br>정지 1년 | 등록취소    |
| · 제한내용이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4의2. 법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2      | 수입업자                 | 해당 품목<br>· 원제의 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5.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5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해당 품목<br>· 원제 · 제품 제조<br>· 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영업정지 1년                        | 영업정지 1년 |
| 5의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5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해당 품목<br>· 원제 · 제품 제조<br>· 수입 및 판매정지 1년 | 영업정지 6월                        | 등록취소    |
| 6.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  | 법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                      |                                         |                                |         |

|                                                                                   |                                              |                                                          |                                                          |                                                          |
|-----------------------------------------------------------------------------------|----------------------------------------------|----------------------------------------------------------|----------------------------------------------------------|----------------------------------------------------------|
| 관·진열 또는 판매한<br>경우<br>가. 제8조의2에 따라 등<br>록을 한 농약                                    | 제조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br>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등록취소                                                     |                                                          |                                                          |
| 나. 법 제20조에 따른<br>표시를 하지 아니한<br>농약등 또는 원제                                          | 판매업자<br>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br>· 원제 ·<br>제품 제조<br>· 수입 및<br>판매정지<br>6월<br>영업정지 | 영업정지<br>1년<br>등록취소                                       |
| 다. 법 제20조에 따른<br>표시사항을 위조 또<br>는 변조하여 거짓으<br>로 표시한 농약등 또<br>는 원제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                 | 해당 품목<br>· 원제 ·<br>제품 제조<br>· 수입 및<br>판매정지<br>1년<br>등록취소 | 6월<br>영업정지                                               | 등록취소                                                     |
| 라. 법 제20조에 따른<br>농약등 또는 원제의<br>용기나 포장의 표시<br>사항이 훼손되어 알<br>아보기가 곤란한 농<br>약등 또는 원제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                 | 경고                                                       | 해당 품목<br>· 원제 ·<br>제품 제조<br>· 수입 및<br>판매정지<br>3월<br>영업정지 | 해당 품목<br>· 원제 ·<br>제품 제<br>조·수입<br>및 판매정<br>지 1년<br>영업정지 |

|                                                                                          |                                      |      |                                         |                                           |                                           |
|------------------------------------------------------------------------------------------|--------------------------------------|------|-----------------------------------------|-------------------------------------------|-------------------------------------------|
| <p>마. 법 제20조제1항에<br/>따른 약효 보증기간<br/>이 지난 농약등</p>                                         |                                      | 제조업자 | 해당 품목                                   | 1월                                        | 3월                                        |
|                                                                                          |                                      | 수입업자 | · 제품 제<br>조 · 수입<br>및 판매정<br>지 1년<br>경고 | 영업정지<br>6월                                | 등록취소                                      |
| <p>바. 다시 포장하거나 나<br/>누어 포장한 농약</p>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                                                                                          |                                      | 제조업자 | 해당 품목                                   | 3월                                        | 등록취소                                      |
| <p>사. 법 제24조제2항에<br/>따른 자체검사증명<br/>서가 첨부되지 아니<br/>한 농약등</p>                              |                                      | 수입업자 | 제조 · 수<br>입 및 판매<br>정지 1년<br>등록취소       | 영업정지<br>6월                                | 등록취소                                      |
|                                                                                          |                                      | 판매업자 | 경고                                      | 해당 품목                                     | 해당 품목                                     |
| <p>6의2. 법 제21조제2항을<br/>위반하여 농약등 또는<br/>원제를 제조 · 생산 ·<br/>수입 · 보관 · 진열 또<br/>는 판매한 경우</p> | <p>법 제7조제1<br/>항제6호, 제2<br/>항제2호</p> | 제조업자 | 경고                                      | · 제품 제<br>조 · 수입<br>및 판매정<br>지 3월<br>영업정지 | · 제품 제<br>조 · 수입<br>및 판매정<br>지 1년<br>영업정지 |
|                                                                                          |                                      | 판매업자 | 경고                                      | 1월                                        | 1년                                        |
|                                                                                          |                                      | 제조업자 | 등록취소                                    |                                           |                                           |
|                                                                                          |                                      | 원제업자 |                                         |                                           |                                           |
|                                                                                          |                                      | 수입업자 |                                         |                                           |                                           |
|                                                                                          |                                      | 판매업자 |                                         |                                           |                                           |

|                                                                    |                             |                                                        |                            |                                                             |                                        |
|--------------------------------------------------------------------|-----------------------------|--------------------------------------------------------|----------------------------|-------------------------------------------------------------|----------------------------------------|
| 7.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7호, 제2항제2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br><br>판매업자                               | 경고<br><br><br>경고           | 해당 품목<br>· 제품 제조 · 수입<br>및 판매정지 3월<br>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3월<br><br>등록취소                    |
|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8호,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br><br>판매업자<br><br>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경고<br><br><br>경고<br><br>경고 | 해당 품목<br>제조 · 수입<br>및 판매<br>정지 3월<br>영업정지 3월<br><br>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1년<br><br><br>등록취소<br><br>영업정지 2년 |
| 9.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9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별점에 따른 처분기준적용              |                                                             |                                        |

가. 별점기준

| 항목별                               |          |      |    | 별점 |    |    |
|-----------------------------------|----------|------|----|----|----|----|
| (1)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 유효성분 함유량 | 허용범위 |    | 1점 | 2점 | 3점 |
|                                   |          | 하한   | 상한 |    |    |    |

|                                                                                                                                                                                                                                                                |                 |     |                     |                    |         |                |        |
|----------------------------------------------------------------------------------------------------------------------------------------------------------------------------------------------------------------------------------------------------------------|-----------------|-----|---------------------|--------------------|---------|----------------|--------|
| <p>초과</p> <p>○미달</p> <p><math>\frac{\text{허용하한치}-\text{분석치}}{\text{허용하한치}} \times 100</math></p> <p>○초과</p> <p><math>\frac{\text{분석치}-\text{허용상한치}}{\text{허용상한치}} \times 100</math></p> <p>○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등의 품목 또는 제품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p> | 2.5% 이하         | 고상제 | 유효 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25% 이하 | 15% 이내  | 15% 초과 20% 이내  | 20% 초과 |
|                                                                                                                                                                                                                                                                |                 | 액상제 | 유효 성분 함유량의 8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5% 이하 | 10% 이내  | 10% 초과 15% 이내  | 15% 초과 |
|                                                                                                                                                                                                                                                                | 2.5% 초과 ~10% 이하 |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0%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10% 이하 | 7.5% 이내 | 7.5% 초과 13% 이내 | 13% 초과 |
|                                                                                                                                                                                                                                                                | 10% 초과 ~25% 이하  |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4%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6% 이하 | 5% 이내   | 5% 초과 10% 이내   | 10% 초과 |
|                                                                                                                                                                                                                                                                | 25% 초과 ~50% 이하  |     | 유효 성분 함유량의 95% 이상   | 유효 성분 함유량의 105% 이하 | 3% 이내   | 3% 초과 6% 이내    | 6% 초과  |
|                                                                                                                                                                                                                                                                | 50% 초과          |     |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 유효 성분 함유량에 절대      | 2% 이내   | 2% 초과 4% 이내    | 4% 초과  |
|                                                                                                                                                                                                                                                                |                 |     |                     |                    |         |                |        |

|                                               |                      |           |                |       |              |        |
|-----------------------------------------------|----------------------|-----------|----------------|-------|--------------|--------|
| (2) 원제의 주요성분 함유량 미달                           |                      | 뺨 값 이상    | 값 2.5를 더한 값 이하 |       |              |        |
|                                               | 주요성분 함유량 50%이하       |           |                |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
|                                               | 주요성분 함유량 50%초과 80%이하 |           |                | 3% 이하 | 3% 초과 6% 이하  | 6% 초과  |
|                                               | 주요성분 함유량 80%초과       |           |                | 2% 이하 | 2% 초과 4% 이하  | 4% 초과  |
| (3) 농약등 또는 원제·부재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              |                      |           |                | 3점    |              |        |
| (4) 농약등의 물리성 불량                               |                      |           |                | 1점    |              |        |
| (5) 농약등의 개체별 용량 또는 중량미달                       |                      | 2% 이상 미달시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           |                | 경고    | 1점           | 2점     |
| (6) 원제 및 그 밖의 성분의 투입비율(제조처방) 위반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           |                | 1점    | 2점           | 3점     |
| 나.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 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           |                |       |              |        |

- 벌점 1점~3점 시: 경고
- 벌점 4점~5점 시: 해당 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 벌점 6점 이상 시: 영업정지 1년

|                                                         |                              |                                                                |                                                     |                                             |                                    |
|---------------------------------------------------------|------------------------------|----------------------------------------------------------------|-----------------------------------------------------|---------------------------------------------|------------------------------------|
|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0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br><br>판매업자<br>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br><br><br><br><br>영업정지 1월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br><br><br>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1년<br><br><br><br><br>영업정지 3월 |
|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9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6월           |
|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9호                  | 제조업자<br>수입업자                                                   | 경고                                                  | 해당 품목·제품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                     | 영업정지 1년                            |

|                                                   |                               |      |         |          |        |
|---------------------------------------------------|-------------------------------|------|---------|----------|--------|
| 1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 해당 품목 · | 년        | 영업정지   |
|                                                   |                               | 원제업자 | 원제 · 제품 | · 원제 · 제 | 1년     |
|                                                   |                               | 수입업자 | 제조 · 수입 | 품 제조 ·   |        |
|                                                   |                               |      | 및 판매정지  | 수입 및 판   |        |
|                                                   |                               |      | 6월      | 매정지1     |        |
|                                                   |                               | 판매업자 | 영업정지 6  | 년        | 영업정지   |
|                                                   |                               | 수출입  | 월       | 1년       | 1년     |
|                                                   |                               | 식물   |         |          |        |
|                                                   |                               | 방제업자 |         |          |        |
|                                                   |                               | 등    |         |          |        |
| 14.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 제조업자 | 경고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                                                   |                               | 원제업자 |         | (시설 등    |        |
|                                                   |                               | 수입업자 |         | 의 보완     |        |
|                                                   |                               |      |         | 시까지)     |        |
|                                                   |                               | 판매업자 | 경고      | 영업정지     | 등록취소   |
|                                                   |                               |      |         | (시설 등    |        |
|                                                   |                               |      |         | 의 보완     |        |
|                                                   |                               |      |         | 시까지)     |        |
|                                                   |                               | 수출입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식물   |         | (시설 등    | 2년     |
|                                                   |                               | 방제업자 |         | 의 보완     |        |
|                                                   |                               | 등    |         | 시까지)     |        |
| 15. 법 제25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                      | 법 제7조제1항제12호, 제               | 제조업자 | 경고      | 해당 품     | 해당 품   |
|                                                   |                               | 원제업자 |         | 목 · 제품   | 목 · 제품 |

|                                                                                                                                                                          |                   |                                                          |                                |                                                     |                                                     |
|--------------------------------------------------------------------------------------------------------------------------------------------------------------------------|-------------------|----------------------------------------------------------|--------------------------------|-----------------------------------------------------|-----------------------------------------------------|
| 에 관한 사항에 대한<br>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br>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항제2호, 제<br>3항제1호 | 수입업자                                                     |                                | 또는 원<br>제 제조<br>· 수입<br>및 판매<br>정지 3월<br>영업정지<br>3월 | 또는 원<br>제 제조<br>· 수입<br>및 판매<br>정지 6월<br>영업정지<br>6월 |
| 17. 1년 이상 방제실적이<br>없는 경우                                                                                                                                                 | 법 제7조<br>제3항제5호   | 판매업자<br>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br>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경고                             | 영업정지<br>2년                                          |                                                     |
| 18. 검역본부장이 정하<br>여 고시하는 수출입식<br>물 검역소독처리규정을<br>위반하여<br>가. 사망사고가 발생<br>한 경우<br>나. 중독사고가 발생한<br>경우<br>다. 훈증 및 약제살포 등<br>소독작업을 부실하게<br>한 경우<br>라. 부적절한 훈증작업<br>(분산투약, 개방후 배 | 법 제7조<br>제3항제5호   | 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영업정지<br>3월<br>영업정지<br>1월<br>경고 | 영업정지<br>2년<br>영업정지<br>3월<br>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2년<br>영업정지<br>3월                            |
|                                                                                                                                                                          |                   |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            |             |             |  |
|--------------------------------------------------------------------------|------------|-------------|-------------|--|
| 기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 할 경우                                        |            |             |             |  |
| 마.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br>1개월 | 영업정지<br>3개월 |  |
| 바. 훈증소독처리하지 아니한 식물을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br>3월 | 영업정지<br>6월  | 영업정지<br>2년  |  |
| 사.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영업정지<br>6월  |  |
| 아.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br>6월 | 영업정지<br>2년  |             |  |
| 자.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경우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 차. 목재포장재 소독과 관련하여 소독처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영업정지<br>6월  |  |
| 카. 대상 식물에 따라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            |             |             |            |
|--------------------------------------------------------------------------------------------------------------------------------------------------------------------------------------|-----------------|------------|-------------|-------------|------------|
| 정한 소독처리 약량,<br>시간 또는 온도를 준<br>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1월          | 3월          | 2년         |
| 타. 소독 중 훈증제를<br>임의로 배출하거나<br>수출입식물 검역소<br>독처리규정에서 정<br>하고 있는 훈증제 외<br>의 다른 가스를 주입<br>하는 등 부정한 방법<br>으로 훈증소독을 실<br>시한 경우                                                              |                 |            | 영업정지<br>3개월 | 영업정지<br>6개월 | 영업정지<br>2년 |
| 19. 농관원장이 정하여<br>고시하는 항공방제업관<br>리규정을 위반하여<br>가. 사망사고가 발생<br>한 경우<br>나. 중독사고가 발생한<br>경우<br>다. 약제살포 등 항공방<br>제작업을 부실하게<br>한 경우<br>라. 농산물의 안전성을<br>위해할 경우<br>마. 항공방제의 위해방<br>지를 위하여 조치할 | 법 제7조<br>제3항제5호 | 항공<br>방제업자 |             |             |            |
|                                                                                                                                                                                      |                 |            | 영업정지<br>3월  | 영업정지<br>2년  | 영업정지       |
|                                                                                                                                                                                      |                 |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영업정지<br>2년 |
|                                                                                                                                                                                      |                 |            | 경고          | 영업정지<br>1월  | 영업정지<br>3월 |
|                                                                                                                                                                                      |                 |            | 경고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 경고          | 1월<br>영업정지  | 3월<br>영업정지 |
|                                                                                                                                                                                      |                 |            |             | 1월          | 3월         |

|                                             |                               |                                                        |                            |      |  |
|---------------------------------------------|-------------------------------|--------------------------------------------------------|----------------------------|------|--|
|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3호, 제2항제4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                           | 등록취소                       |      |  |
| 21.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4호, 제2항제5호, 제3항제7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br>판매업자<br>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등록취소<br><br><br><br>영업소 폐쇄 |      |  |
| 22.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營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1항제15호                 | 제조업자<br>원제업자<br>수입업자                                   | 경고                         | 등록취소 |  |
| 2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營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조 제2항제6호                  | 판매업자                                                   | 경고                         | 등록취소 |  |
| 2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營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조 제3항제6호                  | 수출입<br>식물<br>방제업자<br>등                                 | 영업소 폐쇄                     |      |  |

별표 3의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위

반사항란 다목 중 “제17조의4제5항”을 “제17조의4제6항”으로 한다.

라.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4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의5 제2호가목 중 “농도(유효성분)”를 “농도”로, “어류에 대한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에 속하는 농약등은 Ⅰ급 다음의 Ⅱs급으로”를 “어류 또는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 중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값이 낮은 것을 기준으로 독성정도를”로 하고, 같은 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mg/l, 96시간) |
|-----|----------------------------|
| Ⅰ 급 | 1 미만                       |
| Ⅱ 급 | 1 이상 10 미만                 |
| Ⅲ급  | 10 이상                      |

별표 3의7 및 별표 3의8을 각각 별표 3의8 및 별표 3의9로 하고, 별표 3의8(중전의 별표 3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9(중전의 별표 3의8)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4. 항공방제업자 | 가. 농약등 사용자의 이름·주소·연락처<br>나. 농약등의 품목명<br>다. 품목별 사용일자 및 사용량<br>라. 대상 작물명 |
|-----------|------------------------------------------------------------------------|

별표 3의9(중전의 별표 3의8) 비고 제2호 중 “검역본부장이 수출입식물 방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을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검역 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항공방제업자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로,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을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들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단서 중 “제조일”을 “출하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농업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을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체·원제업체·수입업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체에 대하여, 농약등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농촌진흥청장에게”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농촌진흥청장은”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내용 및 출하지역의”를 “내용”으로 하고, 같은 (1) (가) 중 “직권검사결과”를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직권검사결과”로, “각 시·도지사, 해당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작물보호제판매협회”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로 하며, 같은 (1)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자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 농촌진흥청장,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및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자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 후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2)(가) 중 “해당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로부터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불합격 내용과 출하상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를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해당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통보를”을 “(1)에 따라 불합격 내용에 대해 통보를”로, “시·도지사는 소속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업자로부터 불합격 모집단에 대한”으로,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목 (3)(가) 중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을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불합격 내용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3) (나) 중 “농촌진흥청장에게”를 “농촌진흥청장 및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농촌진흥청장은 불합격 농약등 또는 원제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합격 농약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5) 중 “불합격된”을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판매업자에 대하여, 불합격된”으로, 같은 (5) 중 “확인”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검사절차 등에 대

하여는 각각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제1호 종목란 제1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종목란 제2호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종목란 제3호 중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표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1. 농약피해 분쟁조정 신청 | (조정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0.9 | 조정가액에 따라 산정 |
|------------------|-----------------------|-------------|

별표 7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농약피해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며,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나.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 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다.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210mm×594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를 “210mm×297mm[백상지(150g/m<sup>2</sup>)]”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보존용지(1종)120g/m<sup>2</sup>]”를 “[백상지(150g/m<sup>2</sup>)]”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 쪽)

|                                               |    |
|-----------------------------------------------|----|
| <b>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b>                            |    |
| 소                                             | 속: |
| 직                                             | 급: |
| 성                                             | 명: |
|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농촌진흥청장<br>시·도지사<br>농림축산검역본부장<b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직인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조의2, 제24조의2, 별표 1 및 별표 3의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원제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5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농약 원제업·수입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별표 1의3 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항공방제업자의 판매·구매정보 기록 등에 관한 특례) 항공방제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창고

1)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관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나. 장비

1) 1일(8시간 기준) 10ha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갖출 것

5) 구급약품을 갖출 것

### 3. 기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2)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1) 항공기의 경우

보유 항공기마다 기체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에 가입할 것

2)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

무인동력비행장치마다 또는 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별표 3의7]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제24조의2제3항 관련)

1. 농약등을 운반하는 경우

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 1) 마스크 : 방진마스크 2급 이상
- 2) 방제복 : 화학물질용 보호복 4형식 이상
- 3) 보안경 : 산업용 보호안경 이상
- 4) 장갑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이상
- 5) 흡착포, 흡착제, 삽 등

나. 보통독성 이하 농약등

장갑 :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

2. 원제를 운반하는 경우

가.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를 준용한다.

나. 가목 외의 원제

장갑 : 니트릴글로브 또는 라텍스글로브 이상

3. 비고

가.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운반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별표 1의2에 따른 신고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제1호 중 마스크와 보안경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 ]제조업등록 [ ]원제업등록 [ ]수입업등록  
[ ]제조업변경등록 [ ]원제업변경등록 [ ]수입업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  |  |
|-------------------------|----------------------------------------------------------|--|--|--|
| 등록 신청내역<br>(등록 신청하는 경우) | 자체 검사책임자의 성명                                             |  |  |  |
|                         |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  |  |  |
|                         | 실험실 소재지(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  |  |  |
|                         | 제조장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의 소재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보관창고 소재지                                                 |  |  |  |
|                         | 제조능력(제제형태별로 1일 8시간 기준 제조능력을 적습니다)                        |  |  |  |

|                             |    |      |      |
|-----------------------------|----|------|------|
| 변경등록 신청내역<br>(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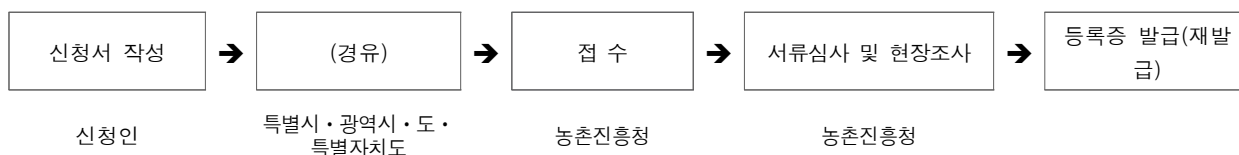
|      |          |                                                                                                                                                                                                                                                                                                                        |          |
|------|----------|------------------------------------------------------------------------------------------------------------------------------------------------------------------------------------------------------------------------------------------------------------------------------------------------------------------------|----------|
| 첨부서류 | 등록 신청시   | 1. 사업계획서 1부<br>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br>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br>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5. 자체 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br>7.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및 수입업 중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원제를 취급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변경등록 신청시 | 1. 등록증 1부<br>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별표 7에 따름 |

## 작성방법

1. [ ] 란에는 처리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 실험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의 주소 또는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실험실의 명칭 및 주소를 씁니다.
4. 제조장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제조장의 주소를 씁니다.
5. 보관창고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보관창고의 주소를 씁니다.
6.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씁니다.
  - 가. 자본금
  - 나.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 다. 연간 생산계획량 및 판매방법
7.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시설 및 장비명 |      | 보유<br>대수 | 형 태 | 재 질 | 실 용 량 |         | 시설 능력<br>(1일 8시간 기준) |         | 비고 |
|----------|------|----------|-----|-----|-------|---------|----------------------|---------|----|
| 주시설      | 부대시설 |          |     |     | 용 량   | 산 출 근 거 | 능 력                  | 산 출 근 거 |    |
|          |      |          |     |     |       |         |                      |         |    |

## 처리절차



## 항공방제업 [ ]신고서 [ ]변경 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                    |        |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  |
|------|---------------------|--|--|
| 신고내역 | 항공기·무인동력비행장치 종류(대수) |  |  |
|      | 방제기술자 성명            |  |  |

|             |    |      |      |
|-------------|----|------|------|
| 변경 신고<br>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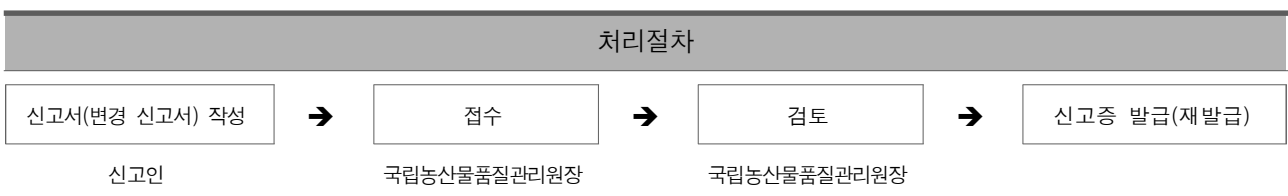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신고 시    |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br>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3. 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5. 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서류 1부. | 수수료        |
|      | 변경 신고 시 | 1. 항공방제업 신고증 1부.<br>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표7에<br>따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No.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plant quarantine treatment provider

1. 법인명(상호명):  
Name of company
2. 사업장 소재지:  
Location of bussiness
3.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4. 약제창고 소재지:  
Location of the  
chemical storage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declared to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f Agrochemicals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Day

농림축산검역본부장  
Commissioner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직인

제 호

No.

## 항공방제업 신고증

### Certificate of declaration for aerial application business

1. 법인명(상호명):

Name of company

2. 사업장 소재지:

Location of business

3.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4. 항공기·무인동력비행

장치 종류(대수):

Type of aircraft·drone

(The number of aircraft):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declared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f Pesticide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Day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직인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지위승계  
[ ]농약품목 [ ]원제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신고서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지위승계<br>신고사항 | 승계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 |        | 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
|              |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        |                |
|              | 지위승계의 사유           |        |                |
|              | 지위승계 일자            |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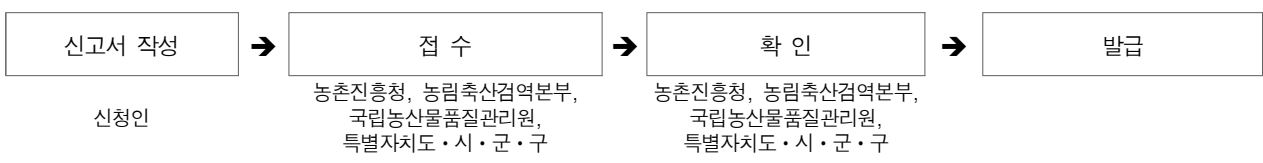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첨부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부.<br>2.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br>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 수수료는<br>「농약관리법<br>시행규칙」 별표 7에<br>따름 |
|------|-----------------------------------------------------------------------------------------------------------------------------------------------------------------------------------------------------|-------------------------------------|

유의사항

제조업·원제업·수입업·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지위승계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지위승계신고서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지위승계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농약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 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적발일 | 농약관리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란에 “없음”으로 적습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고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신고사항 | 폐업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                |        | 폐업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     |
|      | 폐업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보관창고, 사업장(업소)의 소재지 |        |                |     |
|      | 폐업 사유                             |        |                |     |
|      | 폐업 일자                             |        |                |     |
| 비고   | 등록증(또는 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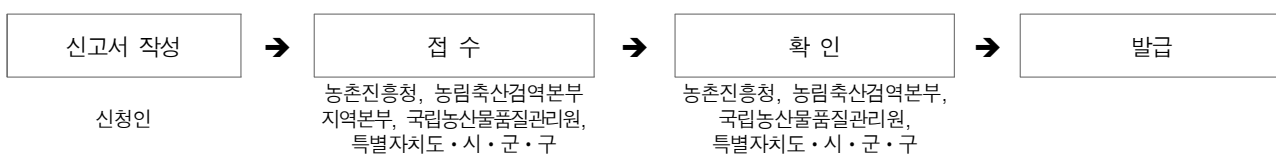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신고인<br>제출서류 | 1. 해당 영업의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br>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br><br>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제조업·원제업·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폐업신고서는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 ]항공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재발급<br>신청내용 | 업종                            |        | 영업등록번호(신고번호)                |     |
|             | 품목(원제,제품)의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 품목(원제,제품)의 명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
| 재발급<br>신청사유 |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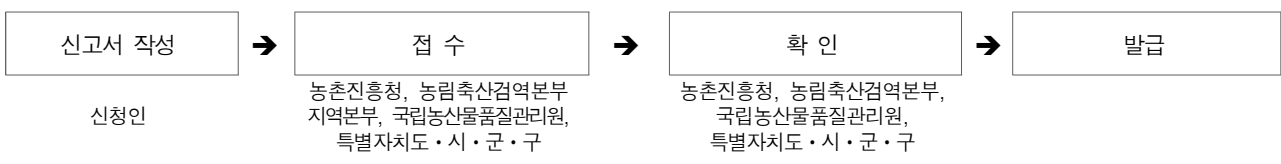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첨부서류 |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수수료<br>없음 |
|------|---------------------------------------|-----------|

#### 유의사항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증, 품목·원제·제품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등록증은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신고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약품목 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신청서**  
**[ ]농약품목 재등록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

(앞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      |     |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9월(단, 수출용 품목의 경우 6월)<br>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 성적서 사용동의를 있는 품목·제품: 3월 |

|     |                    |        |         |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 업 종                |        | 영업등록번호  |  |
|     | [ ]제조업 [ ]수입업      |        |         |  |

|      |                                                                                                                     |  |                                       |
|------|---------------------------------------------------------------------------------------------------------------------|--|---------------------------------------|
| 신청내역 | 품목(제품)명                                                                                                             |  | 상표명                                   |
|      | 품목(제품)의 등록번호(재등록신청에 한한다)                                                                                            |  | 품목(제품)의 등록유효기간(재등록신청에 한한다)            |
|      | 이화학적 성질·상태                                                                                                          |  | 약효보증기간                                |
|      | 용도구분<br>[ ]국내용([ ]제조 [ ]수입) [ ]수출용                                                                                  |  | 취급분야<br>[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
|      |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      |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                                       |
|      | 제조공정                                                                                                                |  | (별지 작성)                               |
|      |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  |                                       |
|      |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  | (별지 작성)                               |
|      | 사람 및 가축에 유해한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br>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br>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등은 그 내용<br>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 (별지 작성)                               |
|      | 제조장의 소재지                                                                                                            |  |                                       |
|      | 제조처방                                                                                                                |  | (별지 작성)                               |
|      | 원제(원료) 공급처                                                                                                          |  |                                       |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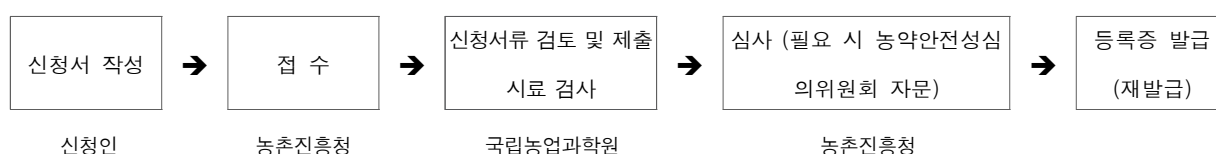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첨부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만 제출합니다)<br>2. 이화학적 성질·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br>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br>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br>5. 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br>6.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br>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합니다)<br>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 제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br>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br>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수수료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유의사항

1. 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청내역란에는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씁니다.
3. 제조장소제지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제지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원제공급처란에는 「농약관리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원제의 제조장소제지를 적어야 합니다.
5.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 또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제 호 ([ ]제조(수출용) [ ]수입)

##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1. 법인명(상호명):
2. 영업등록번호:
3. 주소(사업장):
4. 취 급 분 야: [ ]화학농약 [ ]천연식물보호제 [ ]농약활용기자재
5. 품목(제품)명:
6. 상 표 명:
7.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유효성분의 종류 | 함유량 |
|----------|-----|
|          |     |
|          |     |

8.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뒤쪽 참조
9. 사용방법 및 사용량: 뒤쪽 참조
10. 제조장 소재지:
11. 품목(제품)등록 유효기간:

「농약관리법」 제8조, 제8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뒤쪽)

※ 적용대상 병해충, 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 (앞쪽 제8호 및 제9호)  
[품목(제품)명: \_\_\_\_\_]

210mm×297mm[백상지(150g/m<sup>2</sup>)]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대장

| 등록번호 | 제 조<br>수입<br>수출<br>구분 | 등록일 | 등록자 | 품목(제 품)명 | 유효성분의<br>종류 및<br>함유량 | 적용병해충 및<br>농작물의 범위 | 제 조장<br>소재지 | 등록유효<br>기간 | 비고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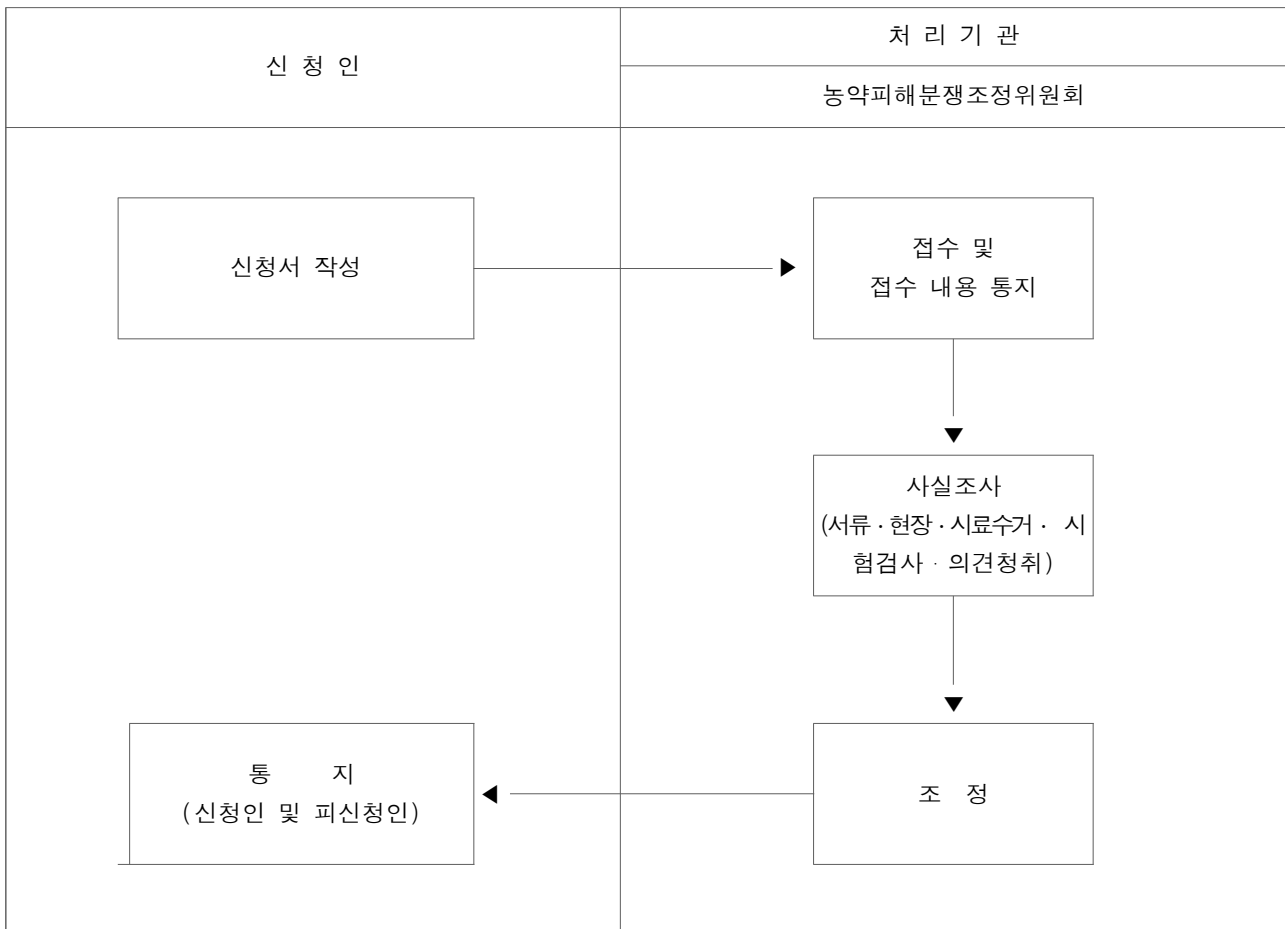
##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1. 비산 및 방제 분야 : 6개월<br>2. 약해 분야 : 18개월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법 인 (전화번호: ) |                                  |                                             |  |
|                                                                 |         | 개 인 (전화번호: ) |                                  |                                             |  |
| 대리인                                                             | 상호(명칭)  |              |                                  |                                             |  |
|                                                                 | 성명      |              |                                  |                                             |  |
|                                                                 | 주소      |              |                                  |                                             |  |
| 피신청인                                                            | 상호(명칭)  |              |                                  |                                             |  |
|                                                                 | 성명(대표자) |              |                                  |                                             |  |
|                                                                 | 주소      | 법 인          |                                  |                                             |  |
|                                                                 |         | 개 인          |                                  |                                             |  |
| 농약피해 발생의<br>일시·장소                                               |         |              |                                  |                                             |  |
| 농약피해 분쟁의<br>내용                                                  |         |              |                                  |                                             |  |
| 조정을 구하는<br>취지 및 이유                                              |         |              |                                  |                                             |  |
| 분쟁의 경과                                                          |         |              |                                  |                                             |  |
| 참고자료                                                            |         |              |                                  |                                             |  |
| 「농약관리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br>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                                  |                                             |  |
| 첨부서류                                                            | 없음      |              |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br>시행령 별표 7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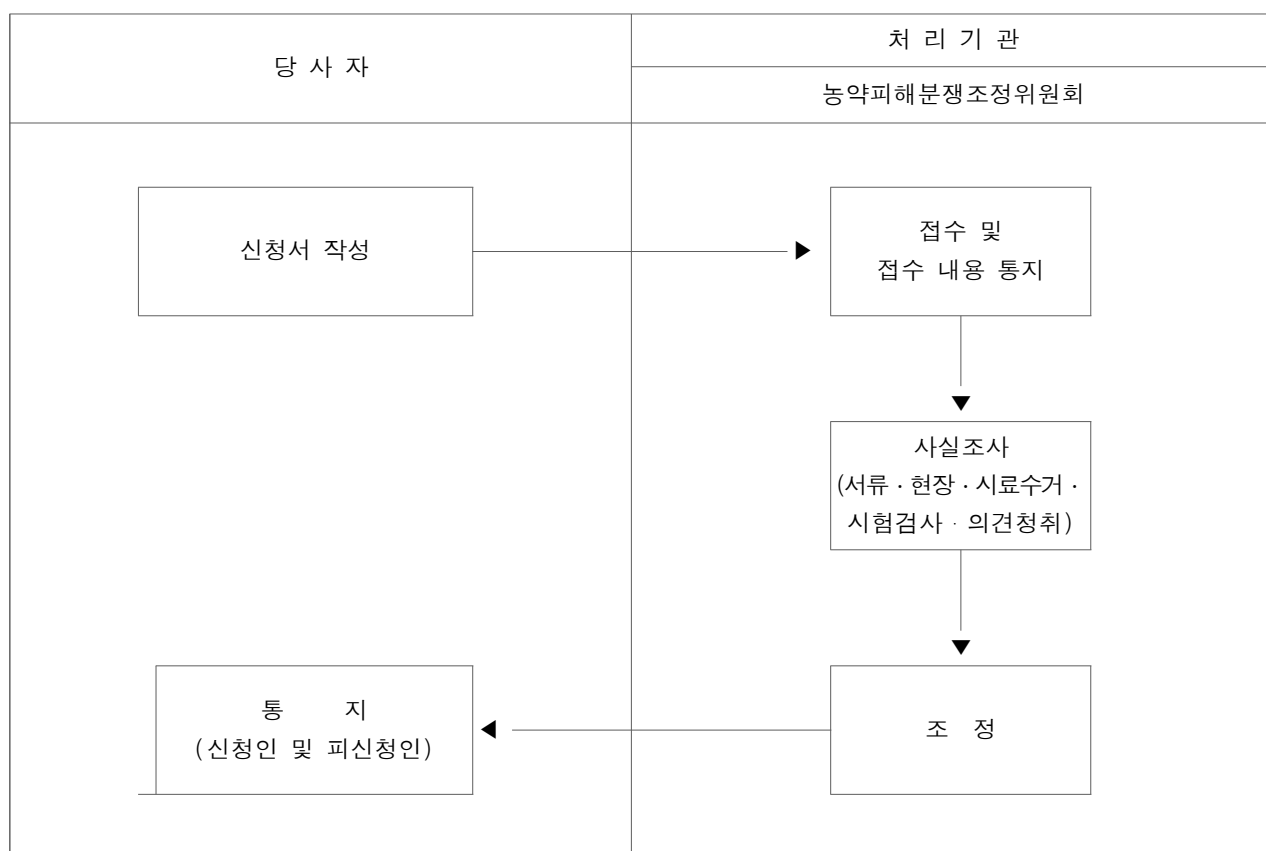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b>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b><br><b>통 지 서</b>                                                                                                                                                                                                                                                                                                                                                                                                                                                                                                                                                                                                                                                               |                              |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사건내용<br>요약                                                                                                                                                                                                                                                                                                                                                                                                                                                                                                                                                                                                                                                                                       | 사건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요약 작성(3줄 내외) |
| 위원 및<br>조사관<br>명단                                                                                                                                                                                                                                                                                                                                                                                                                                                                                                                                                                                                                                                                                |                              |
| 처리 절차<br>등 그 밖에<br>알려야할<br>사항                                                                                                                                                                                                                                                                                                                                                                                                                                                                                                                                                                                                                                                                    |                              |
| <p>「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b>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b><br/>               (전화번호:                      )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left: 20px;">                 인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귀하           </div>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처 리 절 차

이 분쟁조정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제 호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사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55mm × 85mm [백상지 (150g/㎡)]

(뒤쪽)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7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인

55mm × 85mm [백상지 (150g/㎡)]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

####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나. 분쟁의 경과(조사 경과 포함)

####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 3. 사실관계 조사 결과

※ 분쟁과 관련된 현황: 분쟁 농경지 및 그 주변 현황,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농약 사용 현황,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결과, 기타

####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농약 살포 장비 특성 및 기상요건 등을 기술

나. 전문가 심사결과

#### 5. 인과관계 검토

가. 재산적 피해 등

#### 6. 배상 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나. 배상범위

다. 배상액

#### 7. 종합 심사결과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조 사 관 | (서명 또는 인) |
| 조 사 관 | (서명 또는 인) |
| 조 사 관 | (서명 또는 인) |
| 조 사 관 | (서명 또는 인) |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        |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성명(명칭) |
|                                                                                                                                                                                                                                                                                                                                                                                                                                         | 주소     |
| 피신청인                                                                                                                                                                                                                                                                                                                                                                                                                                    | 성명(명칭) |
|                                                                                                                                                                                                                                                                                                                                                                                                                                         | 주소     |
| 신청취지                                                                                                                                                                                                                                                                                                                                                                                                                                    |        |
| 조정내용                                                                                                                                                                                                                                                                                                                                                                                                                                    |        |
| 조정 이유                                                                                                                                                                                                                                                                                                                                                                                                                                   |        |
| 기 타                                                                                                                                                                                                                                                                                                                                                                                                                                     |        |
| <p>「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 결정합니다.</p> <div><div><div>위원장</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위 원</div></div><div><div>년 월 일</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div> |        |

210mm×297mm[백상지(80g/㎡)]



| <b>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b><br><b>조 정 조 서</b>                                                                                                                                                                                                                                                                                                                                                                                                                                                                                                                                           |        |
|--------------------------------------------------------------------------------------------------------------------------------------------------------------------------------------------------------------------------------------------------------------------------------------------------------------------------------------------------------------------------------------------------------------------------------------------------------------------------------------------------------------------------------------------------------------------------------|--------|
|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성명(명칭) |
|                                                                                                                                                                                                                                                                                                                                                                                                                                                                                                                                                                                | 주소     |
| 피신청인                                                                                                                                                                                                                                                                                                                                                                                                                                                                                                                                                                           | 성명(명칭) |
|                                                                                                                                                                                                                                                                                                                                                                                                                                                                                                                                                                                | 주소     |
| 신청의 취지 및<br>이유                                                                                                                                                                                                                                                                                                                                                                                                                                                                                                                                                                 |        |
| 조정 내용                                                                                                                                                                                                                                                                                                                                                                                                                                                                                                                                                                          |        |
| <p>「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8제3항에 따라 이 조정조서를 [    ]부 작성하고 조정위원 및 당사자 양쪽이 기명날인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당사자 양쪽이 각각 1부씩 보유하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정위원회</p> <p>위원장</p> <p>신청인</p> <p>피신청인</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서명 또는 인)</p> <p>(서명 또는 인)</p> <p>(서명 또는 인)</p> </div> </div> <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조정안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어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p>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월 자체검사성적서

|     |     |  |  |  |        |  |  |  |  |  |  |  |  |  |
|-----|-----|--|--|--|--------|--|--|--|--|--|--|--|--|--|
| 제출자 | 업체명 |  |  |  |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  |  |  |

| 구분 | 바코드 | 용도 | 품목명 | 등록규격(%) | 모집단 수량 |      |    |            | 출하일자 | 출하개수 | 검사결과 | 누계   |            | 비고 |
|----|-----|----|-----|---------|--------|------|----|------------|------|------|------|------|------------|----|
|    |     |    |     |         | 모집단번호  | 포장단위 | 개수 | 성분량(kg(ℓ)) |      |      |      | 출하개수 | 성분량(kg(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된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자체검사책임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 유의사항                                                      |
| 1. 자체검사성적서는 출하일이 속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구분은 화학농약, 천연식물보호제, 농약활용기자재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3. 용도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4. 포장단위는 농약 품목의 포장용량(100ml, 500ml, 500g, 1kg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5. 검사결과는 자체검사결과 합격, 불합격으로 적어야 합니다.                        |
| 6. 누계는 당해 연도 1월에서 현재까지의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
| 7. 비고는 제조품목, 수입품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출입식품방제업 및 항공

방제업의 신고) ① -----  
-----  
----- 신고서(변경신고서)-----  
-----  
-----  
-----  
-----  
-----  
-----.

1. (생략)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의3제1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신 설>

## <신 설>

③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 4.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  
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서  
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  
----- 경우 검역본부장은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농관  
원장은 별표 1의3-----  
----- 다음 각 호-----  
-----  
-----  
-----  
-----  
-----.

1. 수출입식품방제업의 경우: 별  
지 제8호서식

##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

④ 제3항-----

제5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  
공방제업의 변경신고) ① ----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방제기술자의 성명

5. 약제창고의 소재지

②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1. 공통사항

가. 법인명(상호명)

나. 사업장의 소재지

다. 대표자의 성명

<삭제>

3. 항공방제업의 경우: 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변동사항(구입, 판매 및 폐기 등)

<삭제>

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약제창고---

② -----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변경신고를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적어야 한다.

## <신 설>

<신 설>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  
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

라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를 하  
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한다.

## 1. 항공방제업 신고증

## 2. 신고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또는 제3항-----  
----- 경우 검역본부  
장은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농관원장은 별표 1의3-----  
----- 다음 각 호  
-----  
-----  
-----  
-----  
-----  
-----

1.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별  
지 제8호서식

##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  
-----수출입식

식물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  
--.

1. 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 별표 1의2

2. 항공방제업의 경우: 별표 1의3

제6조의3(제조업 등의 신청서류의 확인)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원제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에 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제조업, 원제업 및 수입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원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

법 제5조제3항의 제조업자·원제조업자·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항공방제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관원장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검역본부장, 농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  
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제9조(폐업의 신고) ① 제조업자  
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  
을 폐업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  
의 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역  
본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  
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  
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

-----  
-----  
-----  
-----  
-----  
-----.

제9조(폐업의 신고) ① 법 제6조  
제1항-----

-----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  
원제업자·수입업자는 농촌진  
흥청장에게, 수출입식물방제업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  
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항공방제업자  
는 농관원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첨부하여 ---.

1. ----- 신고증(다만, 분  
실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검역본부장, 농  
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  
-----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  
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 재발급  
에 관하여 제10조제2호·제3호  
를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  
제의 범위) (생 략)

<신 설>

-----.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  
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증 -----  
-----.

제12조의2(수출농약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  
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  
는 농약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2  
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국내에서 제조  
하여 수출하려는 농약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  
제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  
적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나.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나.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                                                                                                                                                          |                                                                                                                         |
|----------------------------------------------------------------------------------------------------------------------------------------------------------|-------------------------------------------------------------------------------------------------------------------------|
| <p>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 <p><u>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작물</u>-----<br/>-----<br/>-----<br/>-----</p>                                                       |
| <p>다.·라. (생 략)</p>                                                                                                                                       | <p>다.·라. (현행과 같음)</p>                                                                                                   |
| <p>④·⑤ (생 략)</p>                                                                                                                                         | <p>④·⑤ (현행과 같음)</p>                                                                                                     |
| <p>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p> <p>② 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u>별지 제24호의5 서식</u>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 <u>별지 제25호서식</u>-----<br/>-----<br/>-----.</p> |
| <p>1. ~ 3. (생 략)</p> <p>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별지 제24호의6서식</u>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 <u>별지 제26호서식</u>-----<br/>-----.</p>                   |
| <p>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 지정 신청)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p>                                                                                         | <p>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

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  
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  
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  
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2. (생 략)

② (생 략)

제23조(농약등·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촌진

-----  
----- 별지 제25호서  
식-----  
-----  
-----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  
정) ① -----  
-----  
-----  
-----  
----- 별지 제25호서  
식-----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약등·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세부사항-----  
-----  
-----

홍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2(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  
성 정도별 구분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24조의3(판매·구매 정보의 기  
록 및 보존 등)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  
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하  
는 판매·구매 정보는 별표 3의

-----.  
-----  
-----  
-----.

④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관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  
성 정도별 구분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농약  
등 및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자·원제업자  
·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  
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  
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  
다)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  
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은 별표 3의7과 같다.

제24조의3(판매·구매 정보의 기  
록 및 보존 등) ① -----  
-----  
----- 법 제5조제1  
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

7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촌  
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  
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③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  
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  
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  
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  
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  
다.

④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  
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  
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  
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  
용해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  
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

등”이라 한다)이 --- 별표 3의8  
-----.

② -----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  
-----  
--- 별표 3의9와 ---.

③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은 -----  
-----  
-----  
----- 별지 제27호서  
식-----.  
----- 별지 제27  
호서식-----  
--.

④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  
-----  
-----  
-----  
-----  
-----  
-----  
--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의4(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4조(법 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

3. (생략)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판매·구매 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

⑤ -----  
-----  
-----  
-----  
-----  
---. -----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 검역본부장 또는 농관원장---.

제24조의4(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1항·제16조제4항·제17조제3항  
-----  
-----  
-----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3월 -----  
-----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단,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2.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이하 “농약피해”라고 한다) 발생의 일시·장소

3. 농약피해 분쟁의 내용

4. 농약피해 분쟁의 경과

5. 농약피해 분쟁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접수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  
항

2.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4. 당사자의 적격성

5. 대리인 선임 및 그 대리인의  
적격성

6. 그 외 필요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  
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  
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 내에 제24조의6제1항부  
터 제24조의8제3항까지의 규정

<신 설>

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6개월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분쟁인 경우: 18개월

⑤ 조정위원회는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의 사유로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의6(분쟁조정절차)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명단의 통지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분석·검사·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별지 제32

<신 설>

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관,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그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7(조정절차의 분리·병합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을 종결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제24조의5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한 경우 또는 조정전

<신 설>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취하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절차를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  
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  
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  
우

제24조의8(조정의 성립 등) ① 제  
24조의6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  
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의사표  
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내  
용을 양쪽 당사자 모두 수락하  
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  
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                                                                                                                                                                         |                                                                                                                                                                                                                              |
|-------------------------------------------------------------------------------------------------------------------------------------------------------------------------|------------------------------------------------------------------------------------------------------------------------------------------------------------------------------------------------------------------------------|
|                                                                                                                                                                         | <p><u>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u></p> <p><u>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p> |
|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① (생략)                                                                                                                                                  |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u>별지 제25호서식</u> 과 같다.                                                                                                                      | ②----- <u>별지 제35호서식</u> -----.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u>별지 제26호서식</u> 의 의뢰서를 「 <u>농촌진흥법</u> 」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농업기술진흥원</u> (이하 “ <u>한국농업기술진흥원</u> ”이라 |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br>-----<br>-----<br>-----<br><u>별지 제36호서식</u> -----<br><u>한국농업기술진흥원</u> -----<br>-----<br>-----                                                                                                        |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  
조제1항에 따른 유통 농약등 또  
는 원제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  
는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  
적, 범위 및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  
여 관계공무원이 봉인한 농약등  
이나 원제(이하 “부정·불량농  
약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반자  
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부정·불량농약등 처리요  
령에 따라 수거하여 재가공하거  
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  
6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

-----.

제27조(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① 농촌진흥  
청장, 농관원장 -----  
----- 따른 -----  
-----  
-----  
-----.

농촌진흥청장, 농관원장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재가공·재  
포장-----.

제28조(검사의 기준) 법 제24조제  
7항-----  
-----.

제2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

|                                                                  |                                                             |
|------------------------------------------------------------------|-------------------------------------------------------------|
| <p><u>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br/>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br/>식과 같다.</u></p> | <p><u>24조제9항에 따른 검사공무원<br/>의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과<br/>같다.</u></p> |
|------------------------------------------------------------------|-------------------------------------------------------------|